

석유산업 자유화와 향후 정책방향

신 동 오

〈통상산업부 석유심의관〉

이 자료는 지난 10월 24일 호텔롯데월드에서 열린 유개공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된 것임. <편집자 주>

1. 최근 석유산업의 환경

- 국내 석유산업은 지난 30여년간 양적·질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나, 최근 과거 어느 때보다 전 환기적 환경변화에 직면
 - 우리 나라 석유소비 세계 6위, 정제능력 세계 10 위, 원유 수입 세계 5위
- 대내적으로 에너지의 석유의존도 및 석유수요 증 가율이 여전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, 국민생 활 수준향상과 함께, 청정연료의 수요도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, 바야흐로 '97년부터 『석유산업의 자 유화』가 시행될 예정
 - 에너지의 석유의존도(%) : ('93) 61.9 → ('94) 62.9 → ('95) 62.5
 - 석유수요 증가율(%) : ('93) 9.8 → ('94) 10.1 → ('95) 9.0
- 대외적으로 국제 석유시장은 자원의 유한성·편재 성·산유국의 자원무기화 경향에 따라 구조적 불 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는 가운데, 석유의 OPEC 의 존도가 점차 커지고 있고,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 한 국제적 환경규제 움직임이 강화되는 추세
 - 특히, 최근 이라크사태와 관련, 국제 원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, 상당기간 고유가 유지 전망
 - ※ 두바이유 기준 국제 원유가 : ('96.6) 17.29\$/B → ('96.10.18) 22.23\$/B
- 우리 나라의 OECD가입 계획에 따라 OECD 회원 국으로 구성되는 국제에너지기구(IEA)에도 가입 이 전망되어 우리 석유산업의 국제화 여건이 도래
 - 개방과 자유화에 대응한 전략 수립이 필요

2. 석유산업 자유화의 추진 배경과 주요내용

(1) 추진배경

- 석유는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필수 전략물자로서 그간 정부가 국내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석유산업 전반에 개입하여 왔으나,
- 국내의 환경변화와 경제의 자유화·개방화 추세에 따라 경쟁을 통한 석유산업의 효율성 향상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추진
- '95. 9월 『석유산업 자유화 계획』을 확정하고, 12월 말 그 내용을 반영하여 『석유사업법』을 전면 개정
- 현재 석유사업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작업 진행 중

(2) 석유산업 자유화의 주요내용

<자유화 기본방향>

- 석유산업의 시장기능 제고를 위해 석유산업 전반에 걸쳐 자유화를 추진하되,
- 우리 나라는 석유위기시 수급안정 기반이 대단히 취약한 구조인 점을 고려, 비상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수급안정 장치는 유지

가. 석유제품가격의 자유화

- 현재 휘발유, 등·경유, B-C유, LPG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최고가격제를 유지
- '97. 1월부터 국내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을 자유화 하되,
- 서민용 연료인 LPG는 LNG와의 형평을 위해 유가 자유화후 1~2년뒤 시행을 검토

나. 석유수출입의 자유화

- 현행 제도상 석유수출입업 신고제 및 수출입시 승

인제를 유지

- 사실상 석유정제업자에게만 석유수입 허용
- '97. 1월부터 신고제 및 승인제 폐지등 석유수출입 자유화를 실시
- 다만, 석유정제업과의 형평을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수급안정을 위해 일정 저장시설 보유를 의무화

다. 석유산업 신규진입 자유화

<석유정제업>

- 현재 석유정제업 및 정제시설의 신·증설은 국내 석유수요의 130% 이내에서 허가제를 운영
- '99. 1월부터 석유정제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되,
- 국내 석유수급 안정도모를 위해 일정 규모의 저장시설 보유를 등록요건으로 부여

<석유판매업>

- 현행 석유판매업(대리점, 주유소)은 시·도지사에 의한 허가제를 실시
- '97. 1월부터 석유판매업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 하되,
- 국내 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해 최소한의 저장시설 및 수송 장비 보유규정은 유지

라. 석유산업의 대외개방

- 현재 석유정제업은 외국인 투자지분을 50%까지만 허용하고 주유소업은 외국인투자금지 업종으로 관리
- '99. 1월부터 석유정제업 및 주유소업을 동시에 개방

3. 석유사업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(안) 주요골자

- 석유판매업중 대리점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진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등록요건 일부 완화

(1) 석유사업의 등록요건 설정

- 현행 허가제 또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석유정제업, 수출입업, 판매업의 등록요건으로서 저장시설 기준을 설정
- 정제업자와 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보유기준을 내수판매량 기준으로 일원화하되, 내수·수출간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제업자에 대해서는 생산량 기준을 병과

(2) 석유비축제도 개선

- 석유비축의 활성화, 석유비축의무자(석유정제업자 및 수출입업자)의 비축물량 확보 및 저장시설 확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석유사업법에 신설된 비축대행업의 등록요건을 설정
- 원유 및 석유제품 저장시설 : 1만kl
- 석유가스 저장시설 : 3천톤
- 민간 의무비축 한도를 현행 내수판매량의 30일에

〈표-1〉 석유산업자유화 내용요약

	현행	자유화 내용	시행시기
○ 석유가격	○ 최고가격제 고시 - 휘발유, 등·경유, B-C유, LPG	○ 가격고시제 폐지 - LPG는 유가 자유화후 검토	1997. 1. 1
○ 석유수출입	○ 석유수출입업 신고 및 원유수입승인제	○ 신고제의 등록제 전환 및 승인제 폐지	1997. 1. 1
○ 신규진입 자유화	○ 석유정제업 - 국내 석유수요의 130% 범위내에서 허가 ○ 석유판매업(대리점·주유소) - 시·도지사 허가	○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 ○ 허가제의 등록제 전환	1999. 1. 1 1997. 1. 1
○ 대외개방	○ 석유정제업 - 외국인 투자지분의 50% 만 허용 ○ 주유소업 -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	○ 외국인투자 허용 ○ 외국인투자 허용	1999. 1. 1 1999. 1. 1

〈표-2〉

	현행	개정
• 석유정제업	• 국내수요의 130% 이내 • 외국인 투자비율 50% 이하 • 정제능력 60일분 이상 저장 시설 건설계획	• 석유정제시설 보유 • 내수판매량의 60일분 및 생산량의 45일분을 동시 충족 할 수 있는 저장시설
• 석유수출입업	• 전년도 석유수입량의 45일분 저장시설	• 전년도 내수판매량의 60일분 저장시설
• 석유대리점	• 1,000kl(700kl) 이상 저장시설 • 100kl(50kl) 이상 수송장비	• 700kl 이상 저장시설 • 50kl 이상 수송장비

〈주〉 ① ()는 수도권외 지역

② 내수판매량 : 석유 총수입량(수출물량+비축용으로 수입·판매한 물량)

서 60일로 상향 조정하고, 동 한도량 범위내에서 통상산업부장관이 매년 고시하여 비축의무량을 점진적으로 확대

(3) 석유유통구조 개선 및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규정

- 석유산업 자유화에 따라 현행법상의 3단계 유통경로(정유사-대리점-주유소·일반판매소)를 자율화함으로써 효율적 유통메카니즘 형성을 촉진
 - 단, 자연스러운 구조조정 유도차원에서 일정기간 유예기간 설정을 검토
- 국내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석유유통질서저해행위의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
 - 영업범위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행위, 부당염매행위, 석유제품의 과대광고·선전행위 등

(4) 석유품질관리제도 보완

- 개정 석유사업법상 석유정제업자·수출입업자 등이 제조·판매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을 공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세부 절차 규정을 신설
 - 휘발유·등유·경유에 대한 품질규격을 2개 이상 일간지에 공시케 하고 공시품질규격을 위반한 경우 통상산업부 장관이 위반업소·내용 등에 대한 공표 근거 마련
- 유사휘발유 적발시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안에 따른 처벌의 융통성을 부여
 - 현행법은 유사휘발유에 대해 6개월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외에 과징금 처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민원제기 및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에서의 패소사례가 발생

- 과징금 처분의 여지를 인정하되 불량·저급휘발유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행위에 비해 과징금액을 높게 책정
- 석유가격 자유화에 따라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수수료를 현행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전환
 - (현행)공장도가격의 0.09% 범위내에서 고시 → (개정) 1당 0.2원 범위내에서 고시
- ※ 석유제품에 대한 특소세도 96.1.1 종량제로 전환되었음.
- 현재 석유제품의 품질규격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환경 기준강화 등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품질기준을 통상산업부 고시에 규정토록 개선

(5) 석유부과금제도 개선

- 소액 수입부과금 징수제도의 개선
 - 윤활유, 아스팔트 등 소량다품종 석유제품의 석유 수입부과금 징수는 실익이 별로 없고, 업계불편 및 행정절차비용 증가를 초래하고 있어 일정량 미만의 소액 수입분에 대한 제외 근거 마련
- 발전용 LPG를 공급하는 경우 수입부과금 환급 대상으로 인정
 - 일반전기사업용 저유황중유·LNG와의 형평성 및 LPG수요창출을 고려

(6) 기타사항

- 석유수출입업의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일정 경우에는 등록면제 대상으로 규정
 - 자기 사용 목적으로 10만kl 이하의 석유제품을 수입하는 경우
 - 일정 수량 미만으로서 10 l 이하의 용기에 포장된 석유제품의 수출입을 하는 경우
 - 윤활유·윤활기유 및 아스팔트 수출입을 하는 경

우 등

- 개정 석유사업법에서 신설된 『조건부등록』을 할 경우 일정기간내에 등록요건으로 정한 시설을 갖추어 해당 석유사업을 개시하도록 규정
- 석유정제업자 3년, 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 2년, 석유판매업자 1년

4. 향후 정책방향

(1) 석유산업 자유화의 원활한 시행 및 정착을 위한 기반 조성

- 석유산업 자유화와 함께 새롭게 형성될 시장여건과 각종 제도에 신속히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구축
- 석유사업법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고시개정 작업을 연내에 완료
- '97년 석유가격 자유화에 대비하여 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
 - 국내 유종간 공장도가격 구조를 싱가포르 국제시장 가격구조의 50% 수준에서 75% 수준까지 접근토록 유가 운용방식을 개선('96. 7. 1)
 - 석유류세제 및 석유부과금제도의 개편방안을 추진함으로써 석유 소비자가격의 적정화 및 유종별 수급안정을 도모
- 유가 자유화 이후 석유제품 가격의 변동상황을 적기에 파악할 수 있는 석유가격동향 점검체제를 마련
- 국내 생산품의 수입제품에 대한 경쟁여건 보원을 위하여 원유 관세율의 하향 조정을 검토
 - ※ 현행 원유 및 석유제품의 관세율 : 5%
- 국내 석유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시장메커니즘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함으로써 과

잉·중복투자를 방지

(2)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

- 우리 석유산업은 앞으로 국내 기업간 뿐 아니라 외국의 메이저들과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므로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체 경쟁력의 확보가 긴요
- 지금까지 중점을 두어 온 외적 성장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적정시설 보유를 통해 내실있는 성장을 도모
 - 생산·유통코스트의 절감 및 석유수송·저유 등 물류시설을 최적화하여 내부경영의 합리화 및 원가경쟁력을 제고
 - 생산자인 정유사와 유통단계인 대리점·주유소 등과 계열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함으로써 대외개방에 대비
 - 국내 정유산업의 유전개발등 상류부문 및 연관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하여 경쟁력 있는 종합에너지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
 - 국내 석유소비패턴의 경질화·고급화 추세에 대응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경쟁 촉진 및 고급화를 유도
 -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유통부문의 체질강화를 위하여 석유대리점의 기능 전문화 및 주유소의 경영다각화 등 구조조정을 유도

(3) 석유위기사 총체적 대응능력 제고

- 유기금등·원유도입 차질발생 등 국제 석유시장에서의 긴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하고 원유의 장기·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
- 석유 비축능력 확대를 위하여 정부 석유비축을 2005년까지 60일분 수준으로 제고하고, 민간 석유비축도 현행 30일분 수준에서 매년 점진적으로 확

- 대
- 석유 자주공급 능력 제고를 위한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
 - 탐사사업과 개발·생산광구 확보사업을 병행하여 추진
 - 사업참여방식을 과거 단순 지분참여 위주에서 산유국과의 직교섭이나 국제입찰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성공율을 제고
 - 민간기업의 석유개발사업 진출시 금융지원을 강화
 - 국제유가 급등시 국내유가 인상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유가 완충준비금을 현재 2,900억원 수준에서 '99년까지 1조 2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충
 - 산유국에의 자원사절단 파견·유력인사 초청 및 쌍무적 협력채널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산유국 외교활동을 전개
 - 원유도입의 지나친 중동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원유도입선 다변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
(4) 공정경쟁질서의 확립

석유산업 자유화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관행 정착을 위한 공정한 경쟁의 료를 정립

- 정부·업계·관계기관간 유기적 정보교환 및 협의 채널을 구축하여 시장감시 활동을 강화
- 생산부문과 유통부문간 수직통합 관계의 강화를 통한 석유업계의 자율적 법준수 노력을 유도
- 불공정거래행위·과열경쟁 등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거 단호히 대처

(5) 석유정보 및 물류체계의 합리화

석유관련 정보와 물류의 흐름을 원활히 함으로써 석유산업의 효율성 제고 및 국내 석유수급 안정에 기여

- 정부 - 석유업계 - 유관기관을 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석유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·분석·및 공동 활용체제 및 비상시 위기 대응체제를 연차적으로 구축
 - 기반조성단계('96 ~ '97) : 석유수급정보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, 정유사와 유통업체간 시범망 구축
 - 정비보완단계('97 ~ '98) : 정유사와 하부 유통업체간 통신망 구축, 석유관련정보 DB구축, 석유관련 기관 및 업체에 대한 서비스 개시
 - 확대개발단계('98 ~ '99) : 위기대응시스템 개발, 산업정보망등 타망과 연계
- 총 900Km에 이르는 남북송유관 건설사업을 '97. 6월까지 완료하고 영종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송유관의 추가건설 추진
- 소비지의 석유저장시설 및 수송수단을 확충하고 중·장기적으로 석유공급 지역별 수송체계 재구축 방안 수립

(6) 환경규제 강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

대내외적인 환경규제 강화추세에 따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체제 마련

- 고도화시설의 지속적 확충을 위하여 탈황·분해시설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강구 및 첨단기술·기자재 도입시 세제지원
- 휘발유, 등·경유, 중유의 황함유량 및 자동차 연료의 방향족·벤젠등의 허용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
-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및 환경오염방지 시설설치로 환경오염물질 배출 억제 유도
-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품질검사를 강화하고, 한국 석유품질 검사소의 전문인력을 보강 및 기능 활성화
-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 품질

규격을 공시토록 함으로써 스스로 일정 품질수준을 유지하도록 유도

- 해양유류오염 방제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저공해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

(7) 석유 소비절약 시책의 전개

석유 소비의 효율성 향상과 절약을 통해 국제수지 개선을 기하고 에너지 저소비형 국민경제로의 전환을 도모

-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절약 5개년계획(194개, '92~'96)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중 2단계 5개년계획('97~2001)을 수립
- 운행 혼잡도가 심한 시간대에 2인 이하 탑승 승용차에 대하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차량의 연료소모 절감 운행방법을 집중 캠페인
- ※ 서울시는 '96. 11월부터 남산 1, 3호 터널에 혼잡통행료 징수계획
- 국제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국내석유제품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소비절약을 유도
- 산업체에 대한 에너지절약 진단·지도를 강화하여 절약투자를 유도하고 시설설치 자금을 지원
- 10년 이상 노후보일러 및 요·로를 에너지절약형 신제품으로 개체토록 추진
- '96 에너지절약 촉진대회('96. 11. 7)를 개최하여 에너지절약 공감대 확산 및 에너지관리자의 사기 진작 도모

(8) 석유산업의 국제화 전략 모색

세계 경제의 개방화·자유화 추세에 부응하여 우리 석유산업의 자체능력 및 기술을 활용,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

- 동북아시아 석유수요의 급증·국내 정제능력·계절적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의 수출확대 추진
- 정유산업의 해외투자 진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산유국 메이저들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
- OECD 회원국 가입과 함께 IEA가입을 추진하고 WPC·IEC등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능동적으로 참여

5. 맺는말

- 그동안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우리 석유산업은 급속한 환경 변화와 함께 안팎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
- 이러한 전환기적 과정을 슬기롭게 이겨 나가기 위하여 정부·업계·유관기관 등의 공동대응 노력이 절실
- 우리 석유산업은 개방화·자유화에 임하는 자세와 인식을 새롭게 하여 경쟁의 논리를 체득하고 석유업계의 체질강화를 도모함으로써 2000년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. ☺

<용어해설>

OECD(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)

경제협력개발기구. OEEC의 기능을 인수하여 1961년 9월 발족한 국제협력기구를 말한다. OEEC가 구주(歐州)지역의 경제협력기구였음에 비해 OECD는 전 세계적인 선진제국의 협력기구이다.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된 이 OECD의 설립목적은 경제성장, 저개발국에 대한 원조, 통상확대 등이다.